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20-144호

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3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2. 제정이유

○ 「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「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」와 통합하여 전부개정 함에 따라, 「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규칙」을 폐지하고 「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를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마련함(안 제3조)

○ 생활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을 보다 명확히 정함(안 제6조)

○ 건축물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을 정함(안 제8조)

○ 소 용량 종량제 봉투의 제작 규격을 마련함(안 제12조)

○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(안 제13조)

○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기준을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에 따라 조정함(안 제20조)

○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규정함 (안 제21조)

4. 제정규칙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0년 9월 23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)

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-11,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 (우 10932)
- 전화 : 031-940-4731 / FAX 031-940-473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